#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29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 박성훈·이인선·김성원

이헌승 · 김기웅 · 이달희

김승수 · 이상휘 · 박충권

백종헌 · 조배숙 · 임이자

김도읍 · 최은석 · 조은희

서지영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 우·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 하기 위한 것인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 및 정책기 능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 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31조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①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설립한다.

-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④ 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내부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⑤ 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⑥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미래 전망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수집, 정책 설계 및 분석
-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예우, 복지 등 보훈정책의 종합적인 연구 및 개발
- 3.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개발, 교육 및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 4.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
- 5. 국가보훈에 관한 정책 정보 및 통계의 생산 · 분석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 과 확산, 수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기타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⑦ 개발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⑧ 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⑨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 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 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임 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 1.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방·경찰·소방 등 관련 분야에서 1 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3.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국가보훈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
- ①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 및 제6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⑩ 정부는 개발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③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개발원이 아닌 자는 보훈정책개발원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개발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장(제3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벌칙

- 제31조(과태료) ① 제15조의2제14항을 위반하여 보훈정책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발원의 설립준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훈정

책개발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설립위원회는 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개발 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보훈정책개발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 설립 당시의 보훈정책개발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 ⑦ 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개발원은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의 권리·의무 및 재산 중 보훈교육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 으로 승계한다.
  - ② 개발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보훈교육연구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는 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개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제4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개발원은 설립 당

시 개발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개발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5조의2(보훈정책개발원의 설
	립) ①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
	사,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u>다.</u>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1. 목적</u>
	<u>2. 명칭</u>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u>5. 공고의 방법</u>
	④ 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1. 목적</u>
	<u>2. 명칭</u>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⑤ 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 ⑥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미래 전망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수집, 정책 설계 및 분석
-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예우, 복지 등 보훈정책의 종 합적인 연구 및 개발
- 3.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개발,교육 및 관련 콘텐츠 개발・ 보급
- 4.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

- 5. 국가보훈에 관한 정책 정보 및 통계의 생산·분석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수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기타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⑦ 개발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8 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 1명을 포함한 1 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⑨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 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내지 3호의 경 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 을 받아 임명한다.
- 1.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방・경찰・소방 등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3.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분 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 4. 국가보훈부의 정책을 담당하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 ①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 및 제 6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 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① 정부는 개발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 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u>신</u> 설> <신 설>

- (③)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 (4) 이 법에 따른 개발원이 아닌 자는 보훈정책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개발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u>제5장 벌칙</u>

- 제31조(과태료) ① 제15조의2제14 항을 위반하여 보훈정책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 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